

特許協力條約(PCT)概要

〈III〉

一 承 前 一

⑤ PCT에의 節次

② 國際調查

國際調查는 多數國의 特許廳에서 重複된 先行技術의 조사에 代身하여 權威있는 國際調查機關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며 각국 특허청의 努力과 費用을 輕減시키는데 目的이 있다.

加盟國이 國제조사기관이 되려면 最少限의 特許調查 資料를 整備해야 하고 100名정도의 能力이 있는 專任調查官이 確保된다는 條件이 따른다. 자료로서는 美, 英, 佛, 西獨, 스위스, 日, 蘇에서 發行되는 特許文獻 외에 일정한 非特許文獻의 정비가 필요하다.

國際出願의 調査用寫本은 受理官署에서 國제조사기관에 發送되므로 國제조사기관은 이 사본을 받은 다음 原則적으로 3個月 以內에 조사완료한 調査報告를 作成하게 되어 있다. 國제조사기관이 義務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는 主題는 科學, 數學上의 理論, 醫療方法 또는 調査態勢에 有する 컴퓨터·프로그램 등 조사보고이며 明細書를 해 임등의 記載調査報告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때는 조사보고에 대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宣言을 하게 된다.

국제조사는 審査에 있어 이용될 만큼 많은 關聯이 있는 先行技術을 發見하는 것이 目的이며 조사보고에는 特許性을 判斷하는 데의 意見은 一切 有할 수가 없고 관련되는 先行技術文獻의 列舉가 그 主要事項이 된다.

국제조사보고는 國際出願이 公開되는 언어로 작성된다. 즉 當該 國際出願의 언어가 英, 獨, 佛, 蘇語등의 어느 것일 경우에는 그 종의 해당 언어로 작성되나 國제 출원이 그 이외의 언어일 때는 國제조사보고는 英語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영어 이외로 작성된 國제조사보고는 國제사무국의 책임 아래 영어로 翻譯된다.

국제조사보고는 國제사무국에 보내지는 한편 出願人

에게도 발송되어 출원인은 대개 2개월 이내에 國제사무국에 대하여 請求範圍의 補正書 및 補正說明書를 提出하게 되나 명세서, 도면의 보장은 容納되지 않는다. 또 이 보정은 1回에 局限된다.

國제사무국은 國제 조사보고를 받고 출원인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보정이 있으면 그를 받은 다음 國제출원사본과 함께 指定官署에 移送된다. 이 송장에는 출원은 國內段階에 들어가며 각 지정국의 法律에 따라 特許性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國내 단계에 들어 가기 위해서는 출원인은 優先日부터 20개월이내에 지정판서에 대해서 翻譯文과 國內料金을 納入해야 한다. 이 20개월이란 期限은 國際豫備審查가 行해진 경우의 選擇國에 대하여는 25개월이 延長된다.

파리條約下에 優先權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는 우선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번역을 完了해서 실제로 출원을 해야 되나 PCT에서는 20개월로 연장되어 지정판서는 國제조사보고를 받게 된다. 國제에 비심사가 適用될 경우 選擇官署는 國제조사보고에 加하여 國제에 비심사보고도 받게됨으로 國내 단계에 들어 가려면 다시 5개월 늦은 우선일부터 25개월이 된다.

③ 國際公開

國際事務局은 지정판서에의 轉達과 並行하여 國제출원을 공개할 준비를 進行시켜 우선일부터 18개월 경과 후 즉시 공개된다. 출원인이 희망하면 그 이전에라도 공개될 경우가 있으나 公用言語는 國제출원이 英, 獨, 佛, 蘇語일 때는 그 언어대로, 그외의 언어일 때는 英語로 공개한다.

또 영어 이외로 공개될 때는 國제조사보고와 要約에 대하여는 英文도 同時に 공개된다. 國際公開는 팜플렛形式으로 製作되어 그 表紙에는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國제조사보고와 출원인이 내놓은 청구범위의 보정 및 그 說明書가 編輯된다.

국제공개는 國제사무국에 의해 統一하여 공개되며

영어에 의한 要約이 반드시 添付된다. 국제공개의 指定國에 대한 效果는 지정국의 未審查出願의 強制公開와 同一하게끔 정해져 있다. 그러나 공개언어가 지정국의 公用語와 다를때는 지정국에서 公開初期의 麻譯公開등을 지정할 수가 있다.

또한 국제공개의 先行技術로서의 效果初期에 대하여는 國際出願日이 지정국에서 실제 출원일로 看做됨에도 불구하고 締約國은 일반적인 國內出願과 區別하여 別個의 효과시기를 정한다고 宣言하게 되어 있다.

④ 國內法制와의 相關性

지정판서에 대하여 번역문과 필요한 國內料金이 所定期間内에 納入되면 國내단계에 들어가 각국의 法制下에 國內審查가 이루어 진다. 이에 따라 關係國은 法制上의 準備가 이루어져야 한다.

⑥ 國際豫備審查

國際豫備審查는 단순한 公知資料의 조사뿐 아니라 新規性, 進歩性產業上利用可能性등을 판단하며 출원인에 대하여 特許의 판단, 選擇國에 대하여 그나라에서의 審查業務를 輕減하려는趣旨로設定한 것이다. 그러나 이節次는 PCT加盟國과 출원인으로서 選擇的으로 적용하거나 가맹국이 이 절차적용을保留할 수가 있으며 가맹국이 이 절차를 採用할 경우에도 출원인이 이 절차의 희망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다.

① 國際豫備審查의 請求

가) 국제예비심사의 적용을 認定한 체약국의 居住者 또는 국민으로서 그 국제출원이 그같은 체약국에 제출되었을 때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
 나)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의 결과를 이용할 意思가 있는 나라를 선택국이라 하며 그 선택국은 지정국중에서任意로 선택한다. 이러한 때에도 그 선택국은 국제예비심사의 적용을 유보하지 않는 나라야만 한다. 이 선택국의 선택은 지정국의 지정과는 달리 뒤에 追加할 수는 있다.

② 審查方法

가) 국제예비심사는 별도로 정하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 행한다.

나) 심사의 목적은 對象이 되는 發明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에 대해서豫備의이고拘束力이 없는 見解를 表示한다.

다) 국제예비심사는 국제조사보고를 根據로 행하며 이어서 引用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하나 그외의 자료를 인용하기도 한다.

라) 발명의 單一性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구범위의 減縮 또는 追加手數科의 납입을 命令한다.

마) 국제예비심사기관은 特許性에 대해 否定의견 해일 때에는 最終의 판단을 하기전에 반드시 출원인에 그 견해를通知하고 출원인은 그에 대한 答辨을 할 수가 있으며 또 청구범위, 명세서, 도면의 보정을 할 수가 있다.

③ 審查報告

가) 국제예비심사보고는 원칙적으로 심사의 開始日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된다. 다만 발명의 單一性에 판하여 指定하였을 때는 8개월 이내에 작성된다.

나) 국제예비심사보고에 기재된 사실은 청구범위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의 基準에 適合한가에 판한 것이며 特許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않는다.

다) 국제예비심사보고는 출원인이 제출한 意見書補正書등과 더불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發送되어 국제사무국은 각 선택판서에 전달한다.

④ 選擇官署에의 節次

가) 국제예비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인은 각 지정판서에 국제출원의 寫本과 所定麻譯文의 제출, 수수료를 우선일부터 20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하나 국제예비심사절차를 밟은 것은 우선일부터 25개월이내에 납입한다.

나) 선택판서는 국제예비심사와 더불어 심사에 착수하나 출원인에 대하여 다른 선택판서에서의 심사에 관한 情報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 <계속 : C記>

(庶)(政)(刷)(新)

自身의 周邊을 淨化하여 不條理를 一掃하자!